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

발 의 자 :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유실물에 대하여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20년 전 최초로 유실물 규정이 제정된 때와는 달리 현재는 교통·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기간이 짧아졌고, 유실물 중 고가의 전자기기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므로 습득자의 권리를 보다 빨리 인정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. 이에 따라 유실물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귀속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임(안 제253조).

법률 제 호

##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3조 중 “1年內에”를 “6개월 내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